

# 公園의 保護要領

1978年1月20日 内務部가 自然保護運動의 一環으로 自然保護運動의 길잡이가 될것을 期待하며 發刊한 “自然保護” 冊字中에서 本協會 安元泰事務局長이 寄稿한 “自然保護運動과公園保護” 란 内容中 一部分을 抜萃하여 掲載한것임

註：編輯者

## 1. 公園保護의 其本方向

國立公園과 道立公園등 자연공원은 公園基本計劃과 관리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가 実際의 인 관리업무를担当하나 그 관리의 지역과 内容이 广泛하고 공원자원 또는 위치 등이 매우 多樣하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인 基準이 모두 通用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狀況에 많은 모순이 發見될 때에는 곧 관리계통과 協議調整하는 方法을 取하고 大体로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設定하고 있다.

### 가. 自然保全 優先의 公園管理

자연공원은 우리 나라의 代表的인 自然文化資源을 保全하여 다수의 국민이 永久的으로 保存된 자연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指定의 目的이 있음으로 公園資源의 保全이란 理念에 입각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공원의 자연보전에 직접적인 目標를 둔 보호시설은 勿論, 무질서한 利用으로 인한 자연의 毀損과 汚染을 預防하기 위한 事前措置로서의 이용시설 및 관리운용상 不可欠한 관리시설 등 모든 시설의 基本的인 설치 目的是 공원자원의 保全에 있음으로 공원관리는 自然保全을 최우선적인 至上目標로 하여야 한다.

### 나. 自然景觀에 調和되는 施設 設置

자연공원내의 시설은 공원내 자연의 保全에 필

요하거나 공원이용으로 인한 毀損을 預防하려는 設置目的이 있음으로 시설 자체가 자연의 資源性 침해하거나 景觀美를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공원 이용자로서의 探訪客은 도시개발로 인한 固有自然美의 減失, 日常社会活動에서의 疲勞 등으로 인하여 保全된 자연에의 希求感을 充足시키기 위해서 공원을 探訪하는 것임으로 모든 施設이 도시의 生活 관련 시설에서는 없어졌거나 없어져가고 있는 자연미와 조화된 시설로 設置되어야 한다.

### 다. 景觀과 調和되는 清潔한 環境維持

자연환경은 수려한 자연미를 지닌 地域 임으로 청결함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도시의 청결과 달라 落葉, 枯死木 등 자연생태의 進展이 보호되고 오직 利用者의 人為的인 汚濁을 除去하는 범위에서만 人工이 加해지는 자연환경 유지로 景觀과의 조화미를 이루어야 한다.

### 라. 規制 団束보다 善導・啓導 為主의 管理姿勢

자연공원 이용자는 都市生活, 직장, 가정으로부터의 해방감에서 理性보다는 本能에 의한 衝動이 強하여 무질제한 行動이나 樹木, 施設, 景觀物의 毀損廢品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規制, 团束對象行為를 하기 쉬우나 1次의으로 不法, 不當行為를自制할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과 案内 啓導為主로 하고 犯法行為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惡意

# ◆ 教 材 ◆

의인 경우에는 엄중히 단속하는 관리자세를 지녀야 한다.

## 2. 公園保護의 基準

공원보호란 넓은 意味에서는 공원을 이루고 있는 자연자원, 문화자원과 이들자원이나 利用者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및 利用者만을 위한 利用施設 그리고 이들 모두를 관리할 관리시설을 총칭한다.

### 가. 自然資源의 保護

자연공원으로 指定된 자연경관미를 造成하는 林相, 溪谷, 動, 植物 등 모든 自然相은 공원보호의 基本的인 대상이며 法 (公園法第4条)에 따라 土地利用으로 規制되는데 一般的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管 理 基 準〉

자연자원은 人工에 의한 破損이 禁止되는 것은勿論이며, 風害, 雨・水害 등 자연적 滅失도 事前에 充分한 예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人工의 破損으로부터의 보호는 1次的으로 공원기본계획上의 土地利用 区分에 따라 관리한다.

#### 〈森 林 保 護〉

자연보호내의 森林保護는 既存 林相의 보호를 기준으로하여 土地利用에 따라 다음과 같이 区分된다.

○ 자연보전 지역내 森林一 자연生能系의 進行을 보호하는데 局限하고 伐木하고, 造林 등 모든 営林행위가 금지된다.

○ 자연환경 地域内 森林一 자연환경지역에 있어서는 造林, 育林 등 営林事業이 可能하나 공원 기본 계획상의 보호對象樹種, 動・植物의 生能系와 景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기타 地域内 森林一 농어촌지구와 집단 시설지구는 보호대상 森林이 없는 것이 原則이나 자연보전지역을 除外한 지역에서의 伐採, 造林 등 山

林施業은 공원구역내 山林施業指針에 따라야 한다.

#### 〈地 形 保 護〉

자연공원내에 있어서는 奇岩, 河川石 其他 자연石과 土砂 등의 채취 이동행위가 一切 금지된다.

폭포, 하천의 流路, 溪谷, 丘陵 등도 既存의 자연상태가 保全되어야 하며 人工的인 조형이나 破壞毀損이 금지된다.

공원의 보호, 관리, 이용시설의 設置를 위하여 許可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인 地形에 变化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生 物 保 護〉

자연공원내의 動物, 植物, 昆虫 등 모든 生物体는捕獲, 採集, 驅除가 금지된다.

營林事業上의 해충구제의 경우에도 天敵, 寄生蜂 등 자연생태계에 관한 專門知識에 의한 範圍方法, 使用藥品 등을 檢討한 事前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災 害 予 防〉

공원의 자연자원은 火災, 崩壊, 流失 등의 災害로 因한 滅失, 破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바람 (風), 눈 (雪), 暴雨 등 自然현상으로서의 기상에 의한 재해는 予防이 어렵고 그 自体가 自然資源化할 수 있으나 人工에 의한 崩壊, 流失 등을 招来할 수 있는 도로, 축조, 시설물설치 등은 禁止된다.

火災의 경우 자연적인 發火는 신속한 發見과 진화의 조직체제를 確立하고, 予防을 위하여 登山路 야영장, 휴게소, 烹事 등은 指定된 場所만을 利用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화기취급 사항과 함께 山火 發見時의 報告, 初期消火 등 기초적인 方法을 周知시켜야 한다.

#### 나. 文化資源의 保護管理

공원內 文化資源은 문화재 보호법의 보호대상은勿論이고 우리조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寺刹, 특수건축물, 石材造形物, 유적지 등 文化的 전승가치가 있는 모든 자원으로서 文化財保護法과 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보호된다.

### 〈指定文化財의 保護〉

文化財保護法에서 보호대상으로 指定한 경우에는 1次의으로 文化財保護法에 따라야 하나 그의 형변경, 場所移動, 시설구획의 拡張, 환경 미화造景 등 広意의 보호에 있어서는 공원보호를 위한 全般的인 充分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

### 〈其他 文化資源의 保護〉

文化財保護法의 対象이 아닌 文化財資源은 個人, 団體, 국가기관 등 所有의 형태에 関係없이 必要한 사항을 검토하여 原狀保全이 가능케 하고 自力負担에 의한 보호가 不可能한 경우에는 보조지원 등의 計劃을 수립 시행하되 保全에 必要한 경우에도 人工的인 作業은 事前에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라. 公園의 美化와 清掃管理

자연공원은 아름다운 自然景觀이 공원으로서의 資源이며 生命임으로 自然景觀의 아름다움을 유지보호하는 美化 清掃作業은 공원보호의 主要業務이다. 공원관리자의 創意的 意慾과 利用者の 자연적인 協力を 바탕으로 한 主要利用地域의 清掃 美化로서 清潔, 快適, 秀麗한 公園으로 維持하여야 한다.

### 〈美化 清掃 對象地域〉

공원의 美化는 利用에 의하여 불결해진 것을 除去하여 공원이 지닌 本来의 自然美를 보호 유지하는 것으로써 美化 清掃對象 地区는 다음과 같이 制限된다.

- 集團施設地区 및 그 周辺
- 公園施設 (管理・保護・単独) 地区 및 그 周辺
- 主要 登山路, 利用路線 (항로등) 周辺

### 〈実 施 方 法〉

#### －美化 清掃施設의 組織化

공원관리사무소가 主体가 되어 그 地方의 自然保護協議会와 各級自然保護會와 協調하여 地域別美化班을 편성 조직화 한다.

특히 春季 大清掃期間 등에는 地域內 公共機關 民間團體, 学校 등의 自然保護會에 의한 焦團 清掃地域을 지정하여 미화와 驅虫作業까지 병행하게 한다.

#### －美化 清掃施設의 정비－

공원의 美化 清掃는 利用에 의한 汚濁을 除去하는 것임으로 事前의으로 쓰레기, 휴지 등의 廢棄處理가 효과적일 수 있어야 하고 清掃作業에 있어서도 处理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 휴지통 - 利用施設에 따라 적정위치에 표준 설계대로 備置한다.

○ 处理場 - 쓰레기, 휴지 등 处理할 소작장을一定場所에 설치하고 폐품 등 불연성물질과 汚物 등의 적정처리 방안을 세운다.

#### －利用者의 參與 意慾 鼓吹－

공원의 근본적 対策임으로 공원지정 취지에 따른 청결유지 利用 行為로 인한 汚濁防止, 쓰레기 廢品 등의 自体處理 등 美化 清掃意識을 鼓吹해야 한다.

#### －弘報活動의 展開－

공원이용자, 地域住民, 시설업체 등의 自發的 參與에 의하여 공원이용 안내와 함께 美化 清掃를 위한 공원의 깨끗한 利用과 쓰레기 스스로 치우기 등 協力を 求하는 다음의 弘報活動을 展開한다.

○ 公園入口, 利用路 등의 立看板 및 쓰레기 处理場 등의 標識板

○ 단독시설지구, 野營場, 焦團施設地区 등의 案内板

○ 公園案内, 紹介 등의 印刷物과 시설업체 선전물의 記載

### 3. 公園利用의 案内와 規制

#### 가. 公園利用의 案内

#### 〈公園利用의 概念限界〉

公園의 利用은 우수한 自然資源의 生態系와 景觀 및 所藏한 文化資源 등으로서 現代都市의 日常生活로부터 나타나는 自然希求感을 充足시키고 国

## ◆ 教 材 ◆

民의 保健, 休養, 情緒涵養 등을 図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公園利用은 保全된 自然, 文化的 資源 속에서 公園과 利用者の 모두가 安全하게 利用하는 것이 最上의 利用方法이다.

公園利用은 自然에 親熟하고 祖上으로부터 이어 받은 그대로를 子孫에게 물려준다는 伝承의 概念과 自然保護에 沮害되지 않는 範圍에서만 利用할 수 있다는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

### 〈公園利用의 啓導〉

自然公園의 指定은 1967年부터 實施되었지만 国立公園運動이 微弱하고 自然保全의 意識이 나타난 것은 最近의 現状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国立公園은 隣近 住民들에 의하여 各勝, 觀光地로 利用되어 觀光地化하거나 行樂場으로 認定되온 경우도 있었다.

公園管理는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利用方法을 啓蒙하여 公園의 正常利用이 可能하도록 「公園基本計劃」의 内容을 周知시켜야 하며 集團施設地区나 公園入口壳票所 등에 公園에서의 禁止, 公園規制, 制限行為, 団束對象 内容을 明示한 告知板을 設置하거나 公園案内 油印物에 掲載하는 한편 公園은 놀이터가 아니요 自然資源속에서 心身을 修鍊하는 教化場, 道場임을 自覺할 수 있도록 集團施設地区 各種 施設物들이 調和있게 整備되어야 한다.

### 〈公園利用의 案内〉

公園利用은 急激한 增加現象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公園入口나 著名한 文化遺蹟에 集中된 遊興行樂客은 本格的인 公園管理에 따라 漸次 減少될 것이다.

公園을 觀光하기 보다는 探訪의 姿勢로 利用客이 安全하고 快適하며 不快感 없는 公園利用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 公園指定과 公園管理의 主目的이라 할 수 있다.

公園管理事務所는 利用客의 安全 便益을 위하여 現地 山岳人, 公共機關, 專門家들과 提携하여 精密한 公園狀況 把握과 救助, 案내의 奉仕班을 組織運營하고 不適한 利用을 事前 規制할 수 있어야 한다.

公園案内所, 案内所, 管理事務所, 案内板 등으

-로 安全, 便利, 愉快한 公園利用이 保障되도록 案内하여야 할 主要 留意点은 다음과 같다.

○ 公園內 危險地區 및 有人, 無人 待避所의 正確한 位置

○ 登山路 등의 正確한 距離와 普通 成人の 所要 時間

○ 氣象急變, 洪水 또는 길을 잊었을 때의 待避場所

○ 宿泊施設, 野營場 등의 位置, 利用料, 余裕(當日의 収容能力)

○ 登山路에서의 우물 位置 緊急時 連絡手段

○ 幹線道路, 隣接都市까지의 距離와 定期 交通手段의 時間表

○ 其他 利用客의 問議에 応할 人員, 資料

### 나. 公園에서의 規制行為

#### 〈公園施設의 設置와 管理〉

公園내에 있어서의 公園의 利用 또는 管理에 必要한 다음 施設(公園法施行令 第1条 規定)의 設置, 變更, 管理 등은 公園管理厅의 許可를 받아야 할 수 있다.

○ 道路(公園計劃으로 設置되는 道路, 道路法上의 道路, 事實上 行進에 供하여지는 道路 및 登山路를 말한다.)

○ 広場, 宿泊施設, 土產品展示場 및 商品施設

○ 休憩所, 展望施設, 案内所, 待避所, 造林 造景施設

○ 野營場, 運動場, 水泳場, 船遊場, 스키場, 스케이트場, 골프場, 乘馬場, 弓術場, 어린이놀이터, 車庫駐車場 및 純油施設

○ 運輸施設(公園地域내에서의 路線 또는 航路를 정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自動車, 船舶 또는 「캐블카」에 의한 運送施設)

○ 貯水池, 給水, 排水施設, 医療施設, 公衆浴場, 公衆便所, 汚物處理施設

○ 博物館, 植物園, 水旅館, 博物展示施設, 野外劇場, 民族文化施設

○ 動物 養殖施設 및 養魚施設

○ 砂防施設 및 防火施設, 防災 및 各種 公園標識施設

○ 自然資源 및 文化財 周辺의 環境保護에 必要한 施設